

1. 개정이유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신설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제한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절차 및 선정 통지 기한 등을 신설(안 제40조, 제41조, 별지 22호, 별지 23호)

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제한기간 신설(안 제42조, 별표 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처 사전협의 완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5절(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

제40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54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제7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1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40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동물

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2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8과 같다.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44조(중전의 제41조)제1항 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지급제한 기준을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선정 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1)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 제57조 제1항제1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나. 영 제55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 제57조 제1항제2호	인증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생산한 축산물에 한하여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접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자택전화		
	주소		휴대전화		
농장현황	농장명		축산업허가(등록) 고유번호		
	농장전화		대표 자	성명	
	설립일 년 월 일			생년월일	
	구성원수 명			전화번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최초 인증일 (인증번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수급 횟수			회

축 종	품 종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지급대상 물량 (단위:마리,개)	예상금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이
이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지급대상

축종	품종	농장소재지				사육 두수	지급대상 물량 (단위:마리,개)	예상금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5절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 제40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54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1조(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40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55

<u><신 설></u> <u>제40조</u> (생 략) <u>제41조</u>(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u>별지 제22호서식</u>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 략) <u>제42조</u> ~ <u>제44조</u> (생 략)	<u>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u>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u>제42조</u>(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8과 같다. <u>제43조</u> (현행 제40조와 같음) <u>제44조</u>(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 ----- ----- <u>별지 제24호서식</u>-----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45조</u> ~ <u>제47조</u> (현행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와 같음)
--	--